

유치권포기 및 이행각서

【건축허가권(사업계획승인)의 표시 - 건축허가서 별첨】

1).승인(허가) 관청 :

2).승인(허가) 번호 :

3).건축주(사업주체) :

4).대지(토지)위 치 :

5).주(건축) 용 도 :

6).건 축 물 명 칭 :

본인은 상기 표시 내용의 건축공사의 관련인(건축주, 시공자, 채무자, 연대보증인 등)으로서, 주식회사 █████ 파트너스(이하 '채무자')가 2020. 6. 12.자 대출약정서(이하 '대출약정서')에 따라 상기 표시 부동산을 귀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대출금에 대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아울러 본인이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- 다 음 -

1. 대출약정서상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귀 사에서 위 소재지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(미등기건물 포함), 지상물 등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담보권 실행에 장해가 되는 점유이전거부, 유치권 행사 및 기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, 귀사 또는 위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새로이 권리(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그 어떠한 명목(공사대금 등)으로도 권리)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.

2. 본인은 상기 표시된 건축공사를 조기에 준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체의 협조를 다할 것이며, 건축 준공허가시나 소유권보존등기시 귀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귀사의 사전 동의를 얻겠습니다.

3. 본인은 위 사항들을 틀림없이 이행하겠으며, 위 사항이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귀사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으며, 그밖에 귀사가 취하는 민, 형사상의 절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.

2020년 6월 12일

화약자

주식회사 █████ 디자인

경기도

대표이사

(인)

주식회사 브이원대부 귀중